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6.25.)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

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 제조·판매업자의 영업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적·외부적 요인(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제조·판매업 허가의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해주고 경제 활동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여짐.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의 미개시 또는 1년 이상의 계속적인 휴업시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다수의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참고 필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등(참고자료 참조)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 필요

- 개정안은 취소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 경우로, 영업의 ‘미개시’ 및 영업의 ‘휴업’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유사입법례에서는 영업의 휴업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점(참고자료 참조)과 ‘영업의 휴업시’가 ‘영업의 미개시’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의 사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두 상황 간의 차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개정안은 다른 유사입법례와 동일하게 취소시 고려사항으로 ‘정당한 사유’만을 표현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자의적인 법 집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부승찬의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자의적인 법 집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없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6.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수정
하려는 것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u>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u> ----- ----- ----- -----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u> ----- ----- ----- -----
2. ~ 7.(생략)	2. ~ 7. (현행과 같	2. ~ 7. (개정안과

	음)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판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 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1. <u>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u>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u>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u> --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